

금융투자업자 간담회 자료

2019. 4. .



1 파생상품 양도소득세

□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의사항

- (서울변경) '1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에 따라 동일 파생상품이라도 세율 적용*이 다르므로 서울에 따라 「파생상품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」를 각각 작성함에 주의
 - * '18.3.31.이전 양도분 5% 세율, '18.4.1. 이후 양도분 10%세율
 - * 양도소득 기본공제 순서 ① 5%세율 ② 10%세율
- (국내·외 통산) '17.1.1.이후 양도분 부터는 국내·외 파생상품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함으로 양도 거래내역을 한서식으로 작성
 - * ('16) 국내·외 파생상품 양도소득 구분 계산 → ('17 이후) 소득 통산
- (장외거래) 주식워런트증권의 장외거래 내역은 거래소 전일 종가에 의한 양도·취득가액으로 제공되므로
 - 납세자가 해당거래분의 실제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 필요
 - 장외거래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('세부내역' 다운로드)
 - * 연간 파생상품 거래명세서 우측 마지막 '장외거래여부'란에 "Y"로 표기

□ 신고안내 홍보 협조

- 신고 전 개별안내 및 거래내역 확인 요청시 자료출력 제공
- HTS와 모바일 앱에 배너나 공지사항 등을 통한 신고안내

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안내

- 신고대상 : 2018년 파생상품 양도분
- 신고·납부기간 : 2019.5.1.~2019.5.31.
- 전자신고 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- 상담전화 : 국번없이 126번
- 신고·납부방법 : 「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이드*」 참조

* 홈택스 > 자료실(화면하단 가운데) > 검색창에서 '파생상품'으로 검색

□ 세법 개정에 따른 자료제출 협조

○ (연간·반기 제출서식 통일) 파생상품 과세대상 확대*에 따른
연간·반기 제출 서식 변경은 없으나

- 연간 및 분기 자료 제출시 기초자산의 표기 양식(코스피200, kosp200, KOSPI200 등)을 통일하여 제출

* 분기 : 코스피 200 → 연간 : 코스피 200 ⇒ ○ (정상)
분기 : 코스피 200 → 연간 : KOSPI 200 ⇒ × (오류발생)

- 과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상기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출시 주의 바람

* 과세대상 범위 연혁

·2016.1.1.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최초 시행(기초자산이 코스피200)

·2016.7.1. 미니코스피200 선물·옵션

·2017.4.1. 주식워런트증권(ELW)

⇒ 유가증권이지만 파생상품 거래와 유사하여 과세대상에 포함

·2019.4.1. 기초자산이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

⇒ 코스닥150, KRX300, 변동성지수, 섹터지수, 유로스톡스50 등

2 증권거래세

□ 증권 계좌간 이체자료 서식 변경

<개정내용(제6조의3)>

개정 이전	개정
<p>□ 금융투자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「주권등 거래명세서」 상의 증권거래정보</p> <p>○ 제출자·거래자의 인적사항</p> <p>○ 거래 연월일</p> <p>○ 거래대상 주권 등 종목명</p> <p>○ 거래수량</p> <p><추 가></p>	<p>□ 제출정보 추가</p> <p>(좌 동)</p> <p>○ 증권거래세 신고·납부세액</p>

* '19.4.1. 이후 제출분 부터는 기 배포한 개정 서식에 맞추어 제출

□ 세율 인하에 대한 신고 서식 변경(6.30이후 양도분부터)

○ 증권거래세율 인하(案)

	코스피	코스닥	코넥스	비상장
거래세	0.15% → 0.10%	0.30% → 0.25%	0.30% → 0.10%	0.50% → 0.45%
농특세	0.15% → 유지	없음	없음	없음
계	0.25%	0.25%	0.10%	0.45%

○ 서식 변경(案)

개정전					
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					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					
관리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			
□과세기간 년 월 양도분 (「증권거래세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)					
□과세기간 년 반기 양도분 (「증권거래세법」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)					
① 납세의무자 (신고자)	법인명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	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			
	주소(소재지)				
②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서					③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
① 과세표준					
② 세율	합계	5/1000	3/1000	1.5/1000	1.5/1000
③ 산출세액					
④ 감면세액					



개정후					
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					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					
관리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			
□과세기간 년 월 양도분 (「증권거래세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)					
□과세기간 년 반기 양도분 (「증권거래세법」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)					
① 납세의무자 (신고자)	법인명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	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			
	주소(소재지)				
②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서					③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
① 과세표준					
② 세율	합계	5/1000	2.5/1000	1/1000	1.5/1000
③ 산출세액					
④ 감면세액					

'18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가이드

1.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	1
2. 지방소득세 납부하기	17
3. 신고 부속서류 제출하기	19
4.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서(서식) ...	21

신고 전 유의사항

- ✓ '18.3.31.이전 양도분은 세율 5%를 적용되며, '18.4.1.이후 양도분 부터는 세율 10%를 적용됩니다. 세율에 주의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✓ '17년부터 국내와 국외에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국내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- ✓ 홈택스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와 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엑셀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엑셀뷰어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
- ✓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모든 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정 여부는 거래한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✓ 주식워런트증권(ELW)을 계좌이체 등 장외거래한 경우에는 실제거래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- ✓ 과세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사로부터 비거주자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⇨ 이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(최근 3년)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**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방법**
 민원24(www.nirwon.go.kr) > 자주찾는 민원 > 출입국사실증명 > 로그인(비회원 로그인 가능) > 개인(외국인등) > 증명서 발급 > 스캔 또는 핸드폰 촬영 > 홈택스 업로드

I.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

1. 증권사 HTS → 2. 국세청 홈택스 → 3. 로그인 → 4. 신고/납부 → 5. 양도소득세 → 6. 확정신고 작성 → 7. 기본정보 → 8.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→ 9. 세액계산 및 확인 → 10. 신고서 제출 → 11. 세금 납부하기

1. 증권사 HTS 또는 모바일 웹 배너 등

- 배너 또는 공지사항에서 ‘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’ 를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접속도 가능합니다.

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안내

5월은 2018년도에 거래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.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·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[상담문의 국번없이 126번 전자신고 가이드](#) [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](#)

※ 증권사마다 안내문구나 표현방식은 다를 수 있음

2.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



3. 로그인(회원 또는 비회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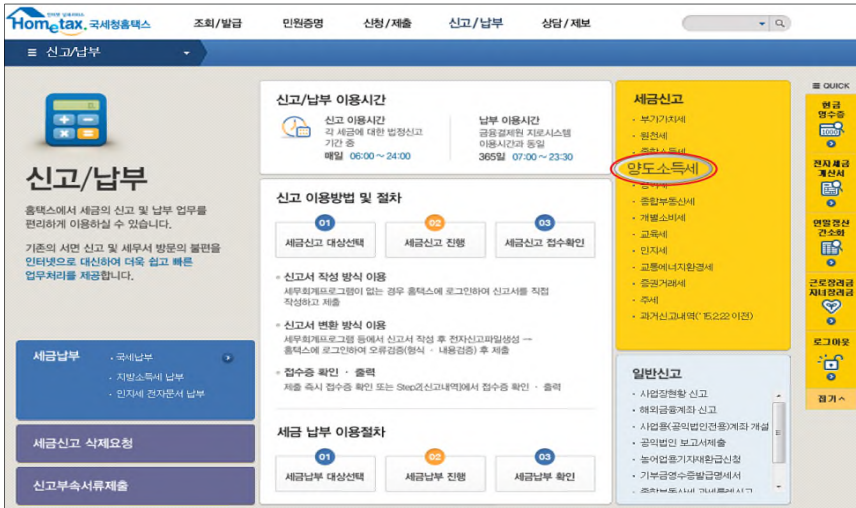
- 로그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㉠ 회원 또는 ㉡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.
 - 공인인증서는 범용이나 용도가 제한된 은행, 증권, 보험용도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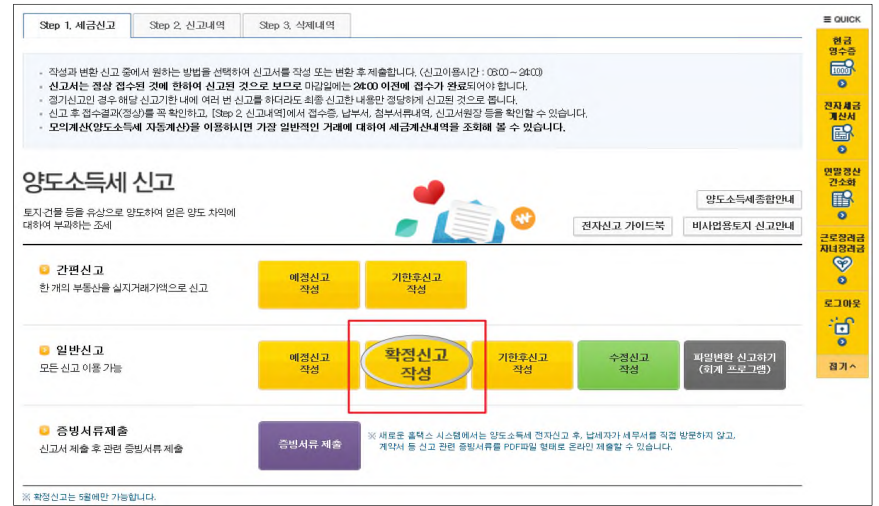
4. 신고/납부 선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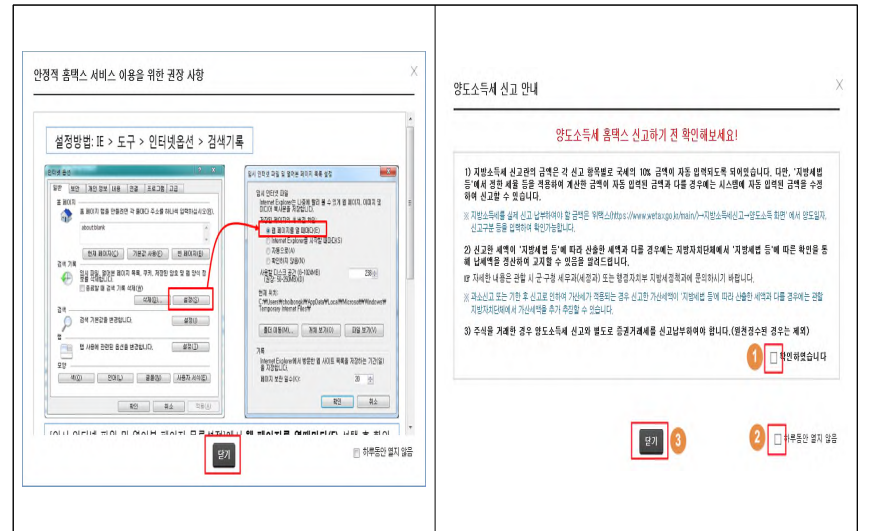
5. 양도소득세 선택



6. 확정신고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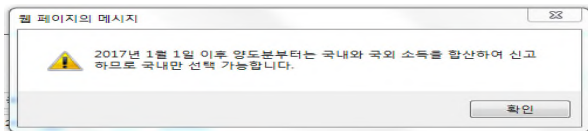


6-1. 팝업창 닫기



7. 기본정보 입력

- ① 국내/국외 구분에서 '국내'로 선택한 후 (2017년 양도분부터는 국내·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)
- ② 양도자산을 '파생상품'으로 선택합니다.



- ③ 연도는 2018년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누릅니다. (월은 자동선택 됩니다.)
☞ 화면 중앙은 신고에 필요한 안내사항입니다.
- ④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.
- ⑤ 다음화면 이동을 위해 [저장 후 다음이동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8.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
1 [중요] 계산명세서 조회

-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①[계산명세서 조회]를 클릭하여 신고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.
- ① 계산명세서 조회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신고 대상 및 금액 등을 확인 후 ② 전체 선택을 클릭하면
☞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 신고대상으로 수록됩니다.

☞ 세율코드

- 세율코드 80 : '18.3.31. 이전 양도분으로 세율 5%가 적용됩니다.
- 세율코드 81 : '18.4.01. 이후 양도분으로 세율 10%가 적용됩니다.
- ☞ 주식워런트증권 장외거래(계좌이체) 등 증권사 제출내역을 자세하게 확인하려면 [세부내역 다운로드]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.

② 추가·수정·삭제 하기

가. 추가하기

- 증권사에서 제출한 신고대상 이외에 추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① 추가하기를 클릭한 후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추가할 내용을 순차적으로 ②입력한 후 ③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.

나. 수정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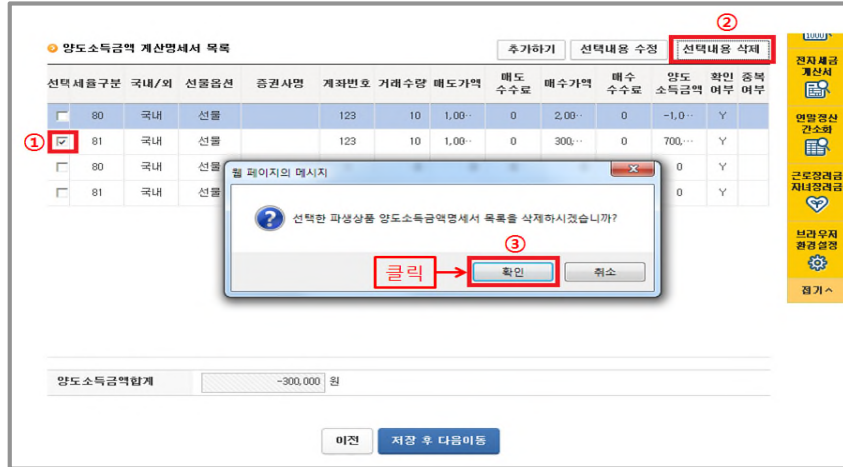
-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파생상품 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
 - 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①(☑)클릭 후 ②선택내용 수정 ③수정할 내용 입력 ④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.

※ 주식워런트증권을 장외거래하여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금액으로 수정하여야 하며,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제출한 전일종가로 세액이 계산됩니다.

- 파생상품의 세율을 수정할 경우(삭제하기→ 추가하기)
 - ① “다 삭제하기” 를 참조하여 수정사항을 삭제하고 “가 추가하기” 를 참조하여 새로이 입력하면 됩니다.

다. 삭제하기

-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파생상품 중에 삭제할 사항이 있는 경우
 - 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①(☑)클릭 후 ②선택내용 수정 수정 ③수정할 내용 입력 ④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.



③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



-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확인하시고 [저장후 다음이동]을 클릭하여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 - ※ 화면이동전 중복신고에 대한 오류검증이 이뤄집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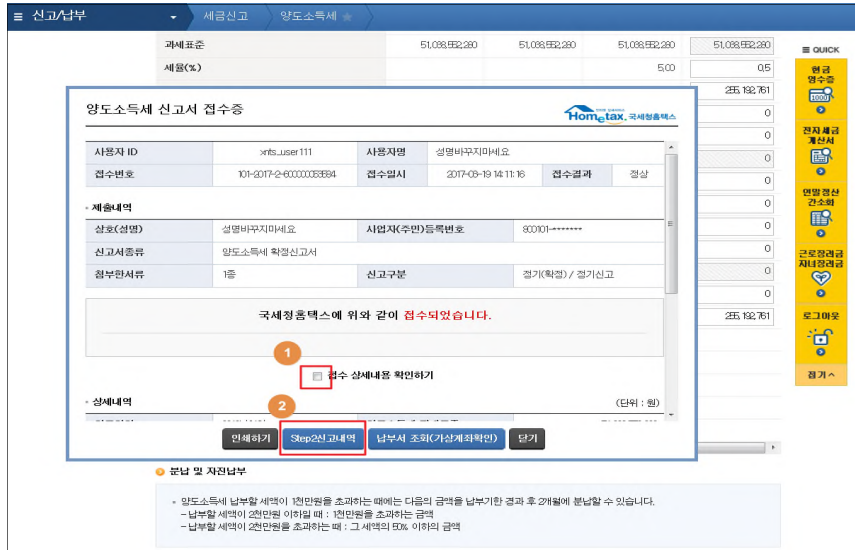
9. 세액계산 및 확인



- ① 계산내역을 확인하고 ‘등록하기’ 클릭, ② ‘저장후 다음 이동’ 을 클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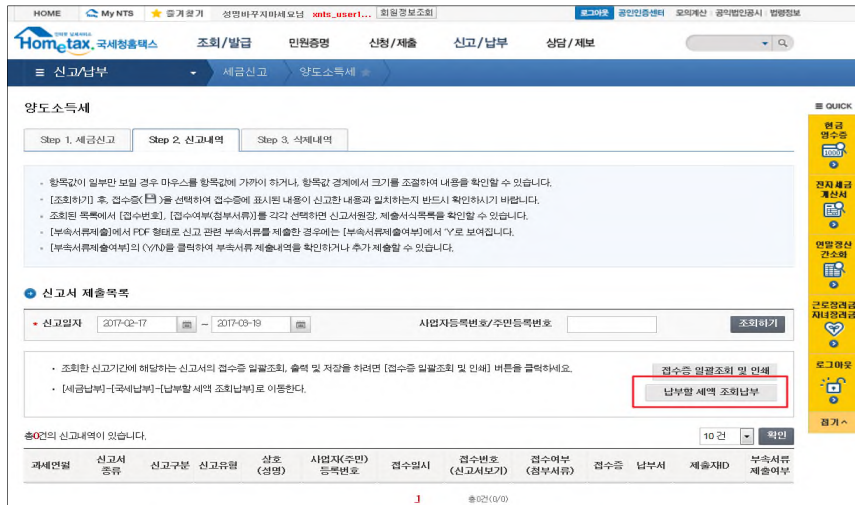
※ 양도소득기본공제는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세율코드 80(5%세율)의 소득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세율코드 81(10%세율)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도록 자동입력됩니다.

11. 세금 납부하기



- ①접수 상세내역 확인하기 클릭 후 ②Step 2 신고내역 선택

11-1.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



11-2. 납부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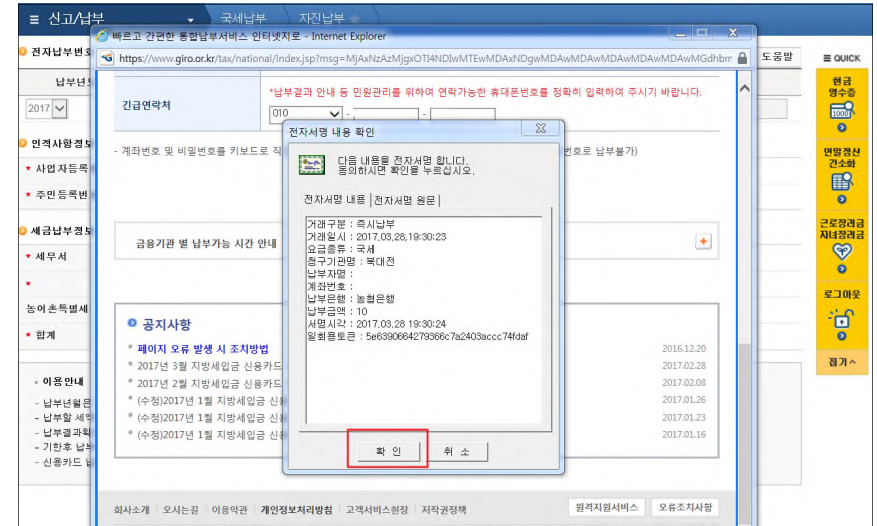
- ①납부세액 입력 후 ②납부하기 클릭하세요.

11-3. 납부금액 재확인 메시지 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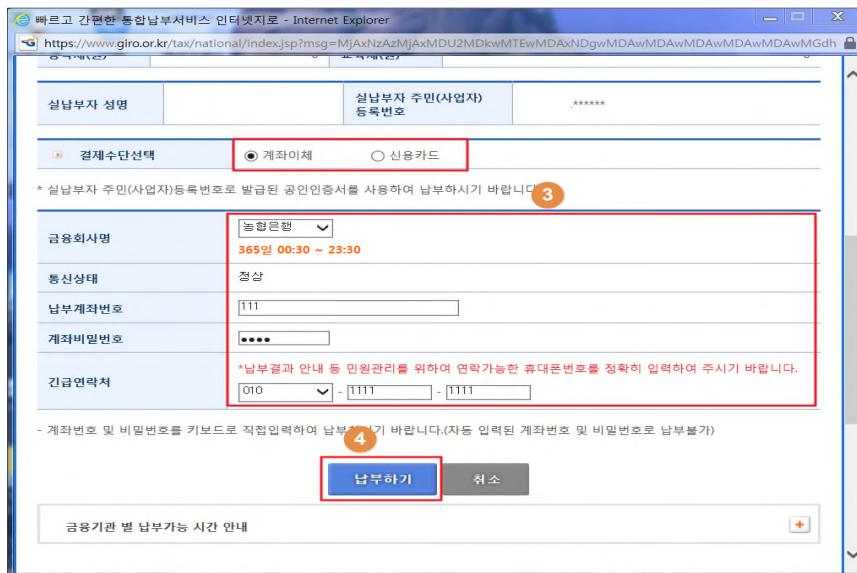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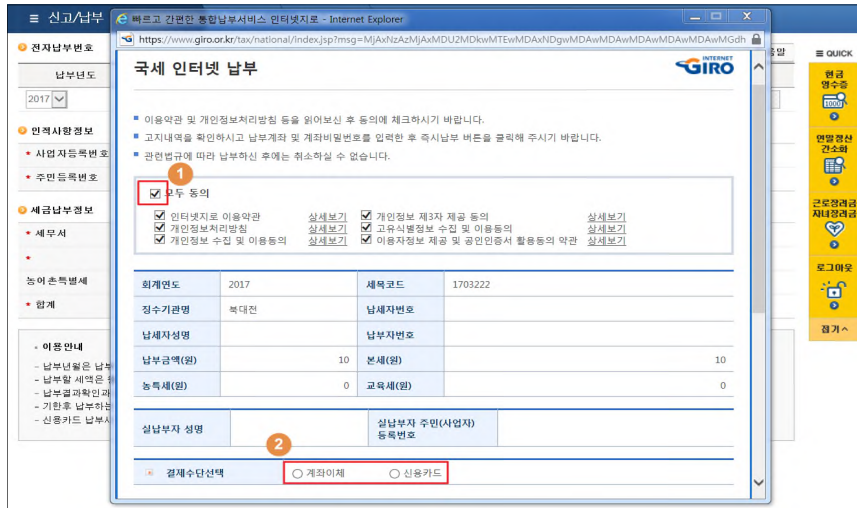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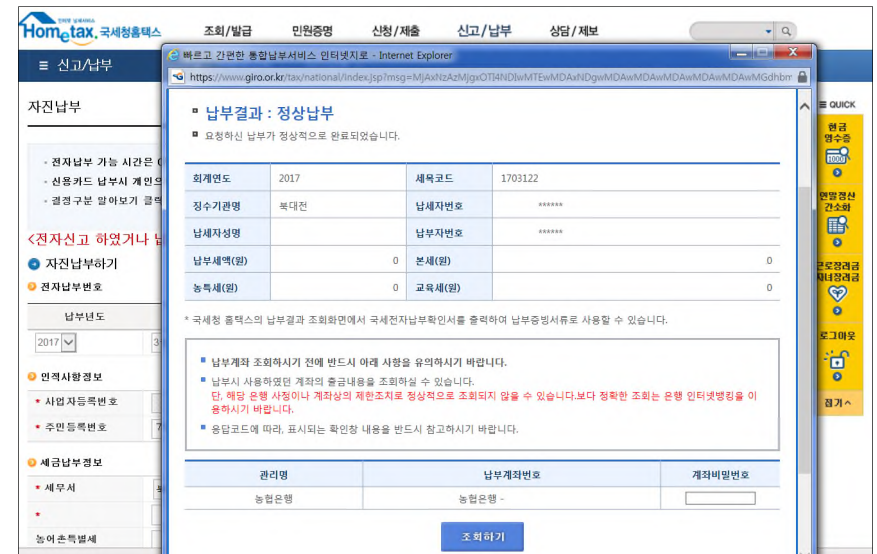


11-4. 국세 인터넷 납부

11-5. 전자서명 내용 확인



11-6. 납부결과 확인(완료)



- ① 모두동의 클릭 후 ②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선택, ③ 납부 내역을 입력 후 ④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..

※ 신고 후 세금을 바로 납부하지 못하여 다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

1. 증권사 HTS → 2. 국세청 홈택스 → 3. 로그인 → 4. 신고/납부 → 5.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→ 6. 세금 납부하기

1. 증권사 HTS 또는 모바일 웹 배너 등

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

5월은 2017년도에 거래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양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.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·납부 하시기 바랍니다.

[상담문의 국번없이 126번](#) [전자신고 가이드](#) [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](#)

※ 증권사마다 안내문구나 표현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접속도 가능합니다.

- 4. 신고/납부 화면까지는 '1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' 화면과 동일

5.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



- 이하 화면은 '1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'의 '11)세금 납부하기' 부속 화면인 2~6번 화면과 동일

II. 지방소득세 납부하기

1. 증권사 HTS → 2. 국세청 홈택스 → 3. 로그인 → 4. 신고/납부 → 5. 지방소득세 납부 → 6. 지방소득세 납부하러 가기 → 7. 위택스 (www.wetax.go.kr) 연계

1. 증권사 HTS

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

5월은 2017년도에 거래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양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.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·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[상담문의 국번없이 126번](#) [전자신고 가이드](#) [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](#)

※ 증권사마다 안내문구나 표현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접속도 가능합니다.

- 4. 신고/납부 화면까지는 '1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' 화면과 동일

5. 지방소득세 납부



6. 지방소득세 납부하러 가기



7. 위택스(www.wetax.go.kr)



※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(etax.seoul.go.kr)에서 납부



III. 신고 부속서류 제출하기

※ 과세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

1. 증권사 HTS → 2. 국세청 홈택스 → 3. 로그인 → 4. 신고/납부 → 5. 신고 부속서류 제출 → 6. 신고부속서류 제출하기 → 7. 부속서류 업로드

1. 증권사 HTS

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

5월은 2017년도에 거래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.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·납부하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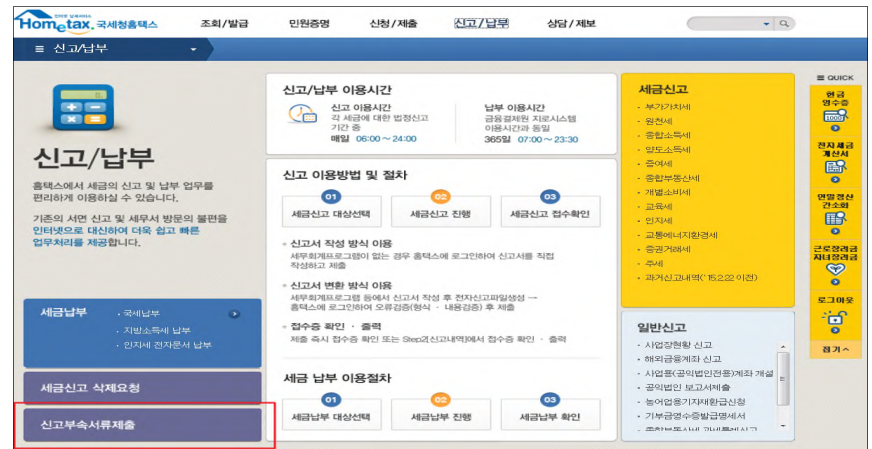
[상당문의 국번없이 126번](#) [전자신고 가이드](#) [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](#)

※ 증권사마다 안내문구나 표현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접속도 가능합니다.



- 4. 신고/납부 화면까지는 '1.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' 화면과 동일

5. 신고부속서류 제출



6. 신고부속서류 제출하기

신고/납부 > 신고부속서류제출

신고 부속서류 제출

- 신고서를 접수완료한 후에 신고서를 제외한 신고 관련 부속서류(증빙서류 포함)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세무대리인 신고시 부속서류는 세무대리인과 개인(법인)이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. 단, 개인(법인)에 신고시 개인(법인)만 부속서류 제출 가능합니다.
- (주의)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한 후, 신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(단, 법인은 해당없음)
- 부속서류 [제출하기] 후 추가제출할 경우, [제출내역보기]의 [부속서류 추가 제출하기]로 계속 제출 가능합니다.

제출대상 신고목록

신고일자: 2017-08-17 ~ 2017-09-19 | 세목: 양도소득세 | 주민등록번호: [●●●●-●●-●●●●]

총 1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. 10건 | 확인

과세연월	신고서 종류	신고 구분	신고 유형	성명 (성명)	사업자(주민) 등록번호	신고서 접수번호	연수증	제출자 구분	제출자id	부속서류
2016년	양도소득	정기	정기		*****	119-2017-2-5000-		본인	TEST700-	제출하기

7. 부속서류 업로드

신고 부속서류제출

- [파일찾기]로 부속서류(증빙서류 포함)를 불러오면 원장 제출대상 파일목록에 보입니다.
- PDF 파일만 제출 가능하므로, 이미지 파일(.jpg, .bmp, .gif, .tif, .png 등)은 [파일변환]을 통해 PDF로 변환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첨부한 내용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.
- 부속서류는 한번 제출시 50M로 제한되나, 50M 초과시에는 2개 이상의 파일로 나눠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[부속서류 제출하기] 후 추가제출할 경우, 제출내역의 [부속서류 추가 제출하기]로 계속 제출 가능합니다.

부속서류 선택

첨부서류
대상 파일선택

<input type="checkbox"/>	NO	제출파일명	파일크기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1	4WvBgbbfNV[1].jpg	3.85KB

동일한 파일은 한 번만 첨부됩니다

삭제 | 파일변환

닫기 | 부속서류 제출하기

※ 부속서류는 핸드폰 촬영한 파일로도 첨부가 가능합니다.

IV.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서

■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84호서식] <개정 2018. 3. 21.>
 * 2010. 1. 1.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(1쪽)

관리번호 [-] (년귀속)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
 ([]예정신고, []확정신고, []수정신고, []기한 후 신고)

신고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내·외국인	[]내국인, []외국인				
1 신고인 (양도인)	성명	주민등록번호	내·외국인	[]내국인, []외국인				
2 양수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양도자산 소재지	지분				
3 세율구분	코드	양도소득세 계	국내분 소계	국외분 소계				
4 양도소득금액								
5 기신고·결정·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								
6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								
7 양도소득기본공제								
8 과세표준 ((4)+(5)-(6)-(7))								
9 세율								
10 산출세액								
11 감면세액								
12 외국납부세액공제								
13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								
14 원천징수세액공제								
15 가산세	무(과소)신고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							
16 기신고·결정·경정세액, 조정공제								
17 납부할세액 ((10)-(11)-(12)-(13)-(14)+(15)-(16))								
18 분납(월납)할세액								
19 납부세액								
20 환급세액								
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		신고인은 「소득세법」 제105조(예정신고)·제110조(확정신고),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(수정신고)·제45조의3(기한 후 신고),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7조 및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·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						
21 소득세 감면세액		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22 세율		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						
23 산출세액		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24 수정신고가산세 등		세무서장 귀하						
25 기신고·결정·경정세액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⑩ 환급금 계좌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⑪ 계좌번호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		⑩ 환급금 계좌번호		⑪ 계좌번호	
⑩ 환급금 계좌번호								
⑪ 계좌번호								
26 납부할세액								
27 분납할세액								
28 납부세액								
29 환급세액								
첨부서류	1.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(부표 1, 부표 2, 부표 2의2,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) 1부 2. 매매계약서(또는 증여계약서) 1부 3. 필용경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4.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.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			접수일 인				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.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							
세무대리인	성명(상호)	사업자번호	전화번호		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관리번호

과세대상연도 년

*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.

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

②세출 구분코드	종목				파생상품 등 매도 내용			파생상품 등 매수 내용			⑬ 양도소득금액
	③국내/외	④파생상품 유형	⑤증권사 등	⑥계좌번호	⑦매도수량	⑧매도가액	⑨수수료 등	⑩매수수량	⑪매수가액	⑫수수료 등	
합계											

297mm×210mm(백상지 80g/㎡)